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26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진수 의원 외 9명
- 나. 발 의 일 : 2019년 8월 6일
- 다. 회 부 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 정 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분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오염·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국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손상'을 '오염·훼손'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 나. 시민들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홍보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다.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19. 8. 19. ~ 8. 26.)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시장으로 하여금 국기 교체 요건을 명확히 하고(안 제7조 제1항),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안 제7조 제2항) 오염·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명문화하여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존엄성의 수호와 애국정신을 고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는 등 구체화하고 있음.

나. 세부 내용 검토

1) 국기 교체 요건의 변경(안 제7조 제1항)

-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국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손상’에서 ‘오염·훼손’으로 국기 교체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국기의 점검·관리)</p> <p>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u>손상</u>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p>	<p>제7조(국기의 점검·관리)</p> <p>① ----- ----- -----<u>오염·훼손</u>----- ----- -----.</p>

- 동 규정은 관련 규정(「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바,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손상)한 현행 국기의 교체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성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 상위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체계 정합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국기 게양 관리) ① 국기를 게양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국기게양대 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변색 또는 파손된 국기게양대는 규정에 맞게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다만, 관련법령(「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는 ‘오염’ 및 ‘훼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가 ‘오염’과 ‘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바, 용어 사용에 따른 기준설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손상’ 등 주요 단어의 개념비교〉

구분	주요내용
손상	파손이나 파괴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어떠한 조짐이 이미 재료 내부에 형성,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상태를 가리킴.
오염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훼손	헐거나 깨뜨려서 못 쓰게되는 경우

-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별표 7에서는 국기의 품질가공 기준 사항에서 세탁전도도¹⁾에서 오염에 대한 표현만 존재하고 있음.

「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별표 7]

국기의 품질가공기준(제14조제5항 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가. 일광견뢰도	4급 이상	1~8급
나. 세탁견뢰도		
- 변 퇴	4급 이상	1~5급
- 오염	4급 이상	1~5급
다. 발 수 도	90 이상	0, 50, 80, 90, 100

비고 : 등급은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 등급을 말함.

2) 국기 수거함 설치 및 홍보 규정 신설(안 제7조 제2항)

- 안 제7조제2항은 국기수거함을 서울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설치·운영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신 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

- 국기수거함의 설치에 관해서는 「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역시도에서는 근거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기관리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시민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1) 세탁 견뢰도[洗濯堅牢度] : 염색한 천이 세탁 후 색상이 변하거나 다른 천을 오염시키는 정도.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6조(국기 게양 관리)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시도별 국기수거함 설치·운영현황]

구분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대전
조례상 설치의무	-	-	-	-	-	-	-
청사내 설치여부	-	○	○	○	○	○	○

- 또한, 민원인의 방문수요가 많은 서울시 본청 민원실 등 산하 공공 기관에도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고, 향후 추가 수요에 대비하여 확산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5개 자치구의 경우중 8개 자치구가 국기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설치 의무를 규정한 자치구는 강북·구로·노원·영등포구가 있음.

[서울시 국기수거함 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

구분	자치구 현황 (‘17.12.31기준)			수거함설치비율	수거량 (월평균)
	계	구청	동		
설치개소	408	20	388	90.7%	1.74
청사 수	450	25	425	-	

※ 비고 : 폐기방식은 자치구별로 상이함.

- 다만, 사업소를 포함한 산하기관의 경우 민원인들의 방문 등을 고려하여 국기수거함 설치를 통해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본 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국기 수거함 제작의 품격제고와 관리 강화(안 제7조 제3항)

- 안 제7조 제3항은 국기수거함을 제작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기수거함 제작시 재질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하고 설치 장소 등을 국가의 품격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신 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 동 조문은 「국기의 게양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적·명문화를 통해 국기수거함의 제작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6조(국기 게양 관리) ②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쓰레기통과 유사한 수거함을 사용하여 국기의 품격을 훼손하거나, 작은 플라스틱함을 구석에 비치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바, 국기의 품격에 맞는 수거함으로 교체하라는 행정안전부(2018년 국기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권고 등을 감안한 관리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잘못된 국기수거함 운영 사례]



※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국기수거함의 용도로 제작되어 판매되는 품목이지만, 재질·색상·형태·사용법 등이 쓰레기통과 동일하여 주민들이 쓰레기통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는 별도 안내문을 붙이는 사례가 있었음(출처 : 2018년 국기관리 실태점검 결과, 3면).

4) 수거된 국기의 폐기(안 제7조제4항)

- 안 제7조제4항은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하여 오염·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신 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실태점검(2018년 국기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기 폐기 방법이 직원 파쇄, 시설 소각, 업체 수거 등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폐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광역시도별 국기수거함 관리·폐기현황]

구분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대전
폐기방법	-	직원 파쇄	시설 소각	미실시	업체 수거	직원 소각	업체 수거

- 한편, 한국과 일본간 역사 및 경제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속에서도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보급 등의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및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사문화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26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6일

발 의 자 : 김진수, 김제리, 고병국,
김용연, 홍성룡, 송아량,
권영희, 김경우, 김소양,
성중기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토록 함으로써 오염·훼손된 국기의 수거와 폐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기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손상’을 ‘오염·훼손’으로 변경함. (안 제7조제1항)
- 나. 시민들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국기수거함을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홍보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하고 관리하도록 함. (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국기의 게양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손상’을 ‘오염·훼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
- ③ 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국기의 점검·관리)</p> <p>시장은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이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7조(국기의 점검·관리)</p> <p>① ----- ----- ----- ----- <u>오염·훼손이</u> ----- -----.</p> <p>② <u>시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한다.</u></p> <p>③ <u>국기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하여야 한다.</u></p> <p>④ <u>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제2항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5,000천원

- 5년간 1회 5,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됨
- 추계의 전제
 - 국기수거함은 반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비용(200천원) 외에 운영비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현재 24개 기관으로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5,000천원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서울특별시 본청 및 산하 공공기관 국기수거함 설치비용	5,000	-	-	-	-	5,000
	소계(b)	5,000	-	-	-	-	5,000
□ 총 비용(b-a)		5,000	-	-	-	-	5,000

○ 국기수거함 설치 비용

- 5년간 1회 발생 비용 ≙ 5,000천원

- 5,000천원 ≙ 200천원 × 25개소(본청 민원실 포함)

※ 자료 : 국기수거함 단가는 인터넷 시중가를 조사하여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